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목 차

I 추진배경






II 기본방향

III 추진경과

IV 주요내용





I 추진 배경

1. 변화와 성장 : 변화 - 대한민국 40년

		1970년	2010년
	개인소득	230 \$	20,700 \$
	수출	8억 \$	4,700억 \$
	자동차	12만대	1,800만대
	기대수명	60세	80세
	대학생수	20만명	374만명

I 추진 배경

1. 변화와 성장 : 성장 - 국가R&D 30년

	1982	2000	2012	비고
 국가 R&D 예산	1,900억 원	3조8천억 원	16조 원	85배
 연구원	2만8천명	16만명	35만명 (2010년)	12배
 수행부처	1개	-	28	모든 부처
 기초연구비중	14%	19.2%	35%	2.5배

⇒ 제도개선 :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슈화

I 추진 배경

2. 연구현장과 외부의 요구사항 - 연구현장의 의견

- 국과위 출범 후 약 3개월에 걸쳐 기업, 연구소, 대학의 의견 수렴 실시
 - 부처별 관리규정(99개)이 복잡하고, 불필요한 부분까지 상이
 - 소규모 기초연구와 대규모 연구를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

현장의 목소리

- ▶ (연구소) “소규모 연구과제도 수십억원이 지원되는 과제와 동일한 분량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 (대학원생) “여러 부처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부처마다 운영규정이 조금씩 달라 규정을 숙지하느라 연구에 전념하기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모든 규정을 숙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I 추진 배경

2. 연구현장과 외부의 요구사항 - 언론과 국회

- 연구자율성 확대, 엄격한 관리, 기술료 제도정비 등 요구

언론·국회 등 지적 사례

- ▶ (국회 교과위) 연구비 지원풍토도 연구자의 재량권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함
- ▶ (국회 예결위) 복잡하고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징수기준 개선 필요
- ▶ (언론) 과학자를 범법자 만드는 사회, 밥 대신 피자 먹어도 연구비 유용
(언론) 15개 연구기관서 2년간 829억원 꿀깍, 국가&D사업비는 '눈먼 돈'

I 추진 배경

2. 연구현장과 외부의 요구사항 - 감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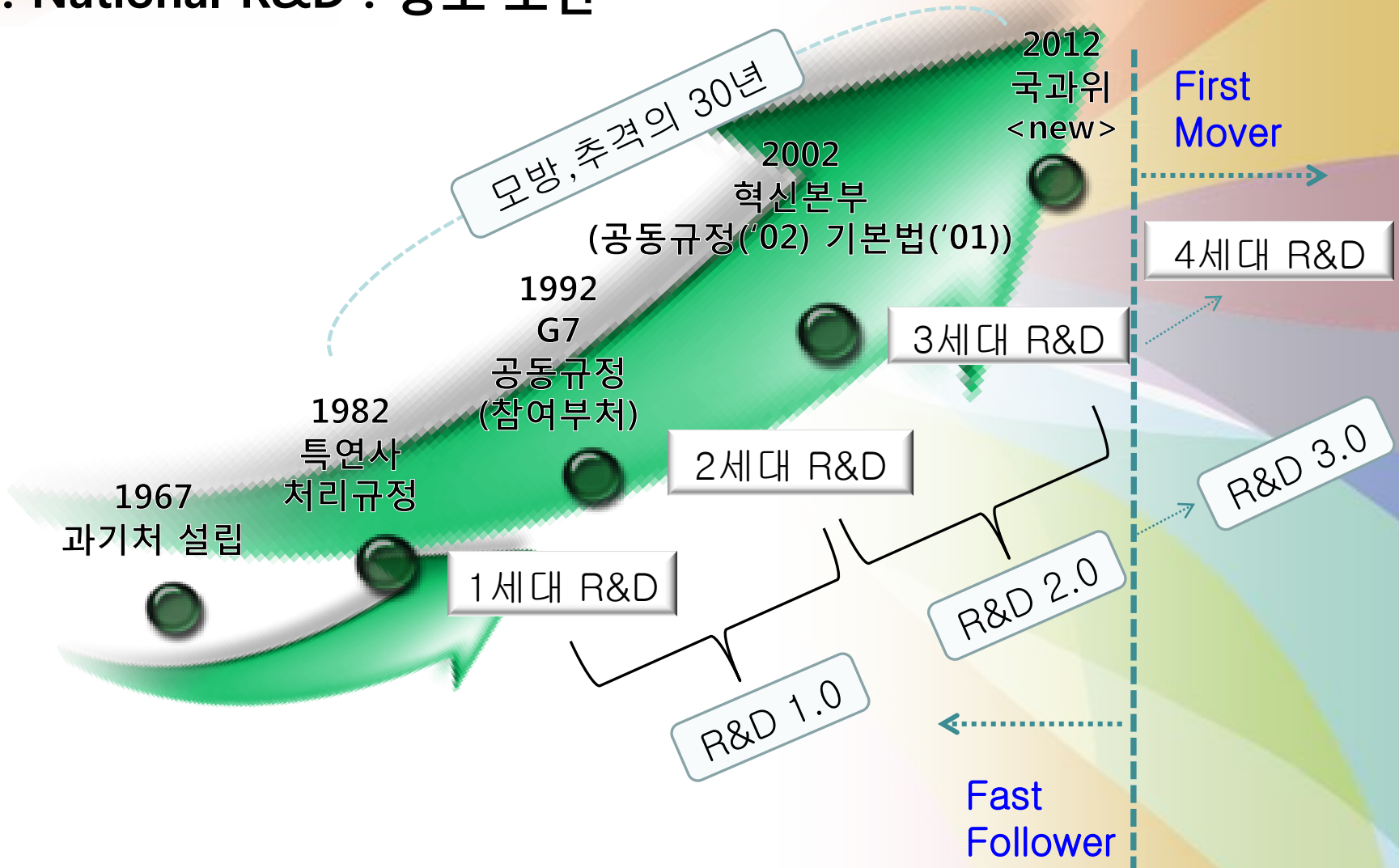
- 미래성장력 제고를 위해 지속 확대되는 국가연구개발비가 연구기관들의 방만한 집행과 횡령 등에 의해 낭비되는 사례 지적

감사원 지적 사례

- ▶ A대학의 B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를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꾸며 인건비 920여 만원을 횡령
- ▶ C연구원은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인건비 76억원을 재원으로 특별상여금 21억원을 전직원 370명에게 지급하는 등 연구직 직원 273명의 인건비를 사실상 평균 40.5% 인상

II 기본 방향

1. National R&D : 창조·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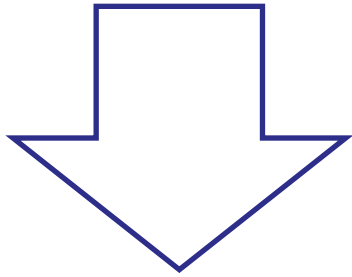


II 기본 방향

2. 연구현장 : 자율 & 책임

자율 : 연구자에 대한 신뢰 / 시장에 대한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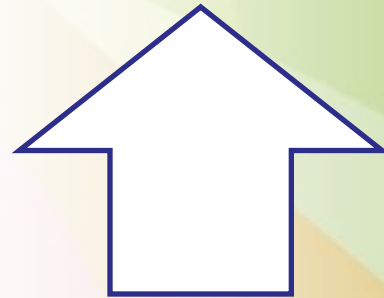
VS 책임 : 자율에 대한 정당성 확보



자율(우수한 연구성과의 창출 및 확산)



책임
(국민의 소중한 세금)



II 기본 방향

3. 정부부처

연구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일성

VS 부처별 특성 존중을 위한 재량 인정

통일성

부처특성
존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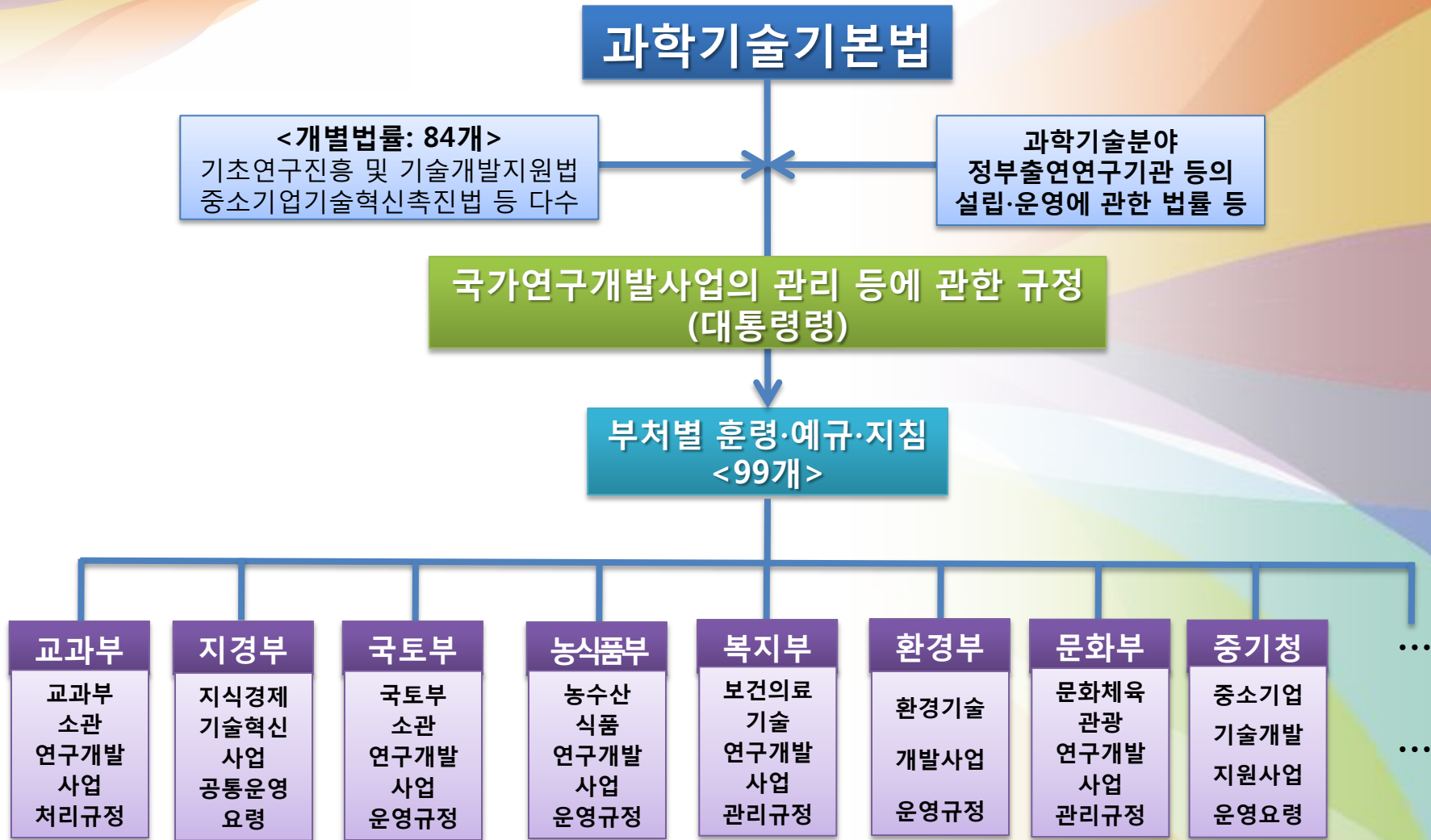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 관련 법령체계 - 1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간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 산업기술촉진법 등 84개 법률에 근간하여 추진 중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을 기준으로 18개 부처별로 훈령 예규 등 총 99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
- ◎ 개별부처는 **공동관리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음

공동관리규정 제34조(세부규정의 제정·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 관련 법령체계 - 2



Ⅲ 추진 경과

• 국과위 출범(2011.3.28) 이후

- 3개월간 산·학·연 현장의견
- 4개월간 작업반(부처추천 전문가 55인으로 구성) 운영 및 부처 협의
- 1개월간 시안에 대한 공청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 2011.12.22 개선방안을 마련

• 이를 토대로 “공동관리규정” 개정 작업 추진

- 조항별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 2012.5.8 국무회의 의결, 2012.5.14 규정개정 완료



IV 주요 내용

1.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기준 정비 - 연구비 비목의 간소화

4개 비목, 7개 세목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회의비·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비



2개 비목, 8개 세목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신설)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비

IV 주요 내용

1.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기준 정비

▷ 전문기관 승인사항 명확화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계획 없이 집행하거나 변경한 경우
- 계속과제의 직접비를 다음연도에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
- 과제 관련 신규채용 중소기업 연구원의 인건비 감액 시
- 위탁개발비를 계획보다 20%이상 증액 시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 증액 시



▷ 연구과제추진비 신설 - 회의비, 식대, 국내여비 등에 사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 정산하기로 정한 과제의 경우 : 필요한 경비 계상
 - 정산하지 않기로 정한 과제의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비의 10%내에서 정한 금액 계상
- 단, 정산여부와 관계없이 증명자료 필요, 사용실적보고 실시

IV 주요 내용

1.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기준 정비

▷ 직접비 정산기준의 명확화

구분	불인정 기준
연구과제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출장여비 :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 하나 이상을 갖추지 않고 집행한 경우 • 회의비 : 사전원인행위나 회의록 없이 집행한 경우 • 식대 : 평일 점심 식대
연구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협약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시 - 인건비 감액 변경 시 비례해서 연구수당도 삭감 • 합리적 기준이 없거나,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IV 주요 내용

2. 출연(연) 및 특정(연) 참여율 제한 완화

<문제점>



- 과제별 시작·종료 시점의 차이로 참여율의 **실시간 관리의 어려움 발생**
- 참여율이 100% 미만인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재원 확보 문제 발생**

▷ 개인별 참여율 100%관리를 **기관총액예산 기준**으로 전환(개인 최대 130%)



연구자의 총인건비 100% 지급 후 불가피하게 초과금액이 발생한 경우

-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
- 사용내역은 국과위·기재부·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보고

IV 주요 내용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개선(2013.1.1 시행)



<문제점>

- 학생인건비 1년 이월을 불인정 하는 등 부처별 운영방안 상이
- 연구책임자를 기준으로 학생인건비를 관리하나, 정산은 과제단위로 이루어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의 어려움 발생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인건비 정산 및 잔액의 반납 면제



- (적용기관 확대) 학연협동연구 지원을 위해 출연(연)에도 확대적용
- (정산 및 반납면제) 과제공백기에 학생인건비로 지급 가능
☞ 단, 학생인건비 증액 시 사전승인 필요
- (관리강화) 신청자격요건 마련, 연2회내 점검 실시
- (지정취소) 학생인건비 공동사용 및 잔액의 과다발생, 전산시스템 미흡 시

※ 2013.1.1 시행하는 내용의 관리지침은 금년 하반기 공고 예정

IV 주요 내용

4.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기준 마련

▷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한 엄중한 대처

	종 전	개 정
참여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령, 편취, 유용 : 3~5년 ▪ 의도적 부정집행 : 2~3년 ▪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 : 2년 이내 	용도외 사용금액이 해당 과제비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초과 : 5년 이내 ▪ 20%초과 ~30% 이내 : 4년 이내 ▪ 20%이하 : 3년 이내
사업비 환수	별도 규정 없음	해당연도 정부출연금 이내

! 참여제한기간 확대(5→10년), 3회 이상 연구비 부정사용 시 국가R&D사업 참여 영구제한 등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사항으로, 금년 하반기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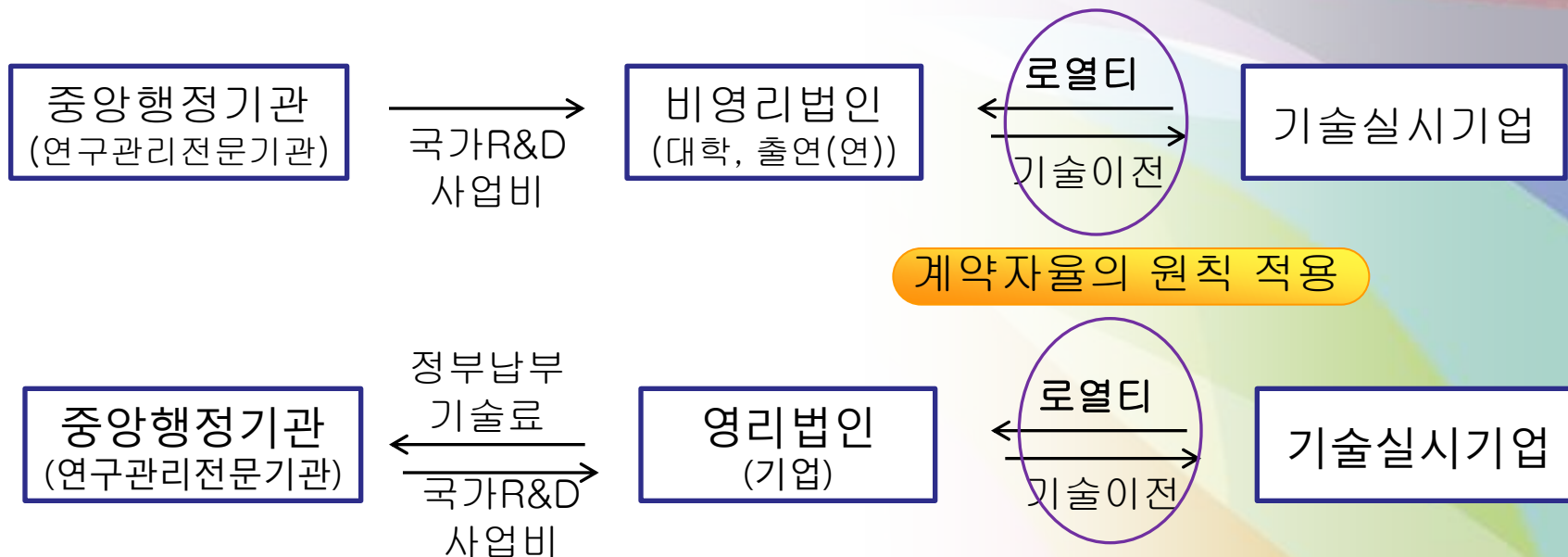
IV 주요 내용

5.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 지원 및 3책5공 제한 완화

▷ 중소기업의 정부납부 기술료 부담 완화 : 정부출연금의 15~20% → 10%

※ 중견기업(30%), 대기업(40%)로 정부납부기술료 기준 통일

※ 로열티 개념의 기술료의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간 징수방법, 시기 금액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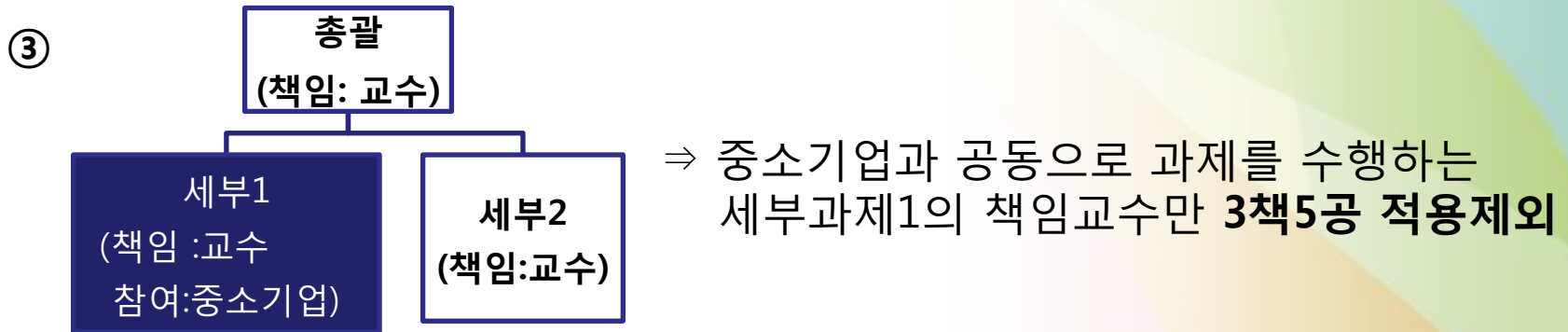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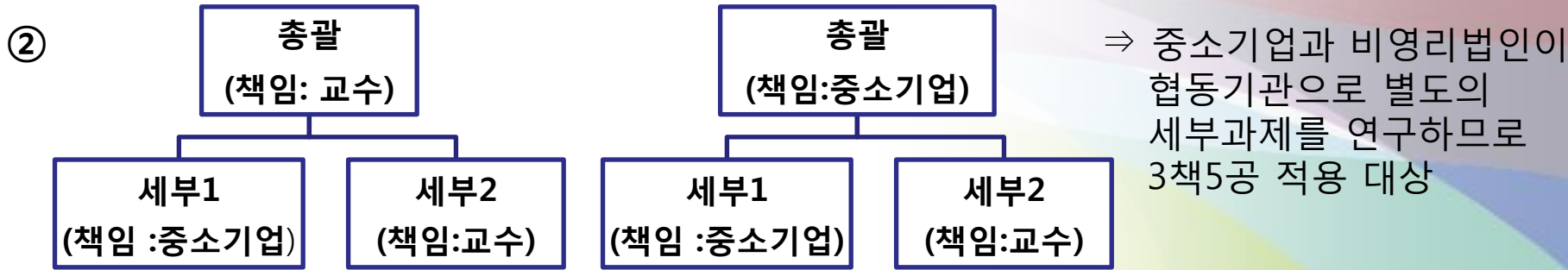


IV 주요 내용

5.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 지원 및 3책5공 제한 완화

▷ 중소기업과의 공동과제로 정부출연금이 1억원 이하의 과제는 3책5공 적용제외 (세부과제기준, 위탁과제 제외)

① **책임:교수** 참여:중소기업 **책임:중소기업** 참여:교수 ⇒ 단독과제를 공동 수행하는 경우로 **3책5공 적용제외**



IV 주요 내용

- <참고> 정부출연금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공동과제 외에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이하인 소액과제도 3책5공 적용제외
-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단독연구개발과제**에 한해 3책5공 적용제외
- ▷ 완화된 3책5공 기준의 적용시기 : **'12.7.2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
-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과제참여현황 등을 NTIS와 연계된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R&D 도우미센터 자료실(사업관리>기타)에 고시와
설명자료 게재
(제목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고시)



IV 주요 내용

6. 기초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도입

▷ 창의적, 도전적 연구의 촉진

- 기초연구단계 과제 중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과제는
 - 다년도 협약과제의 연차별 연구비 사용잔액은 사전 승인 없이 이월사용 가능
 - 결과보고서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간소화
 - **성실수행에 대한 불이익 조치 면제** 명확화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선정시 감점 면제)



IV 주요 내용

7. 간접비 기준정비

• 간접비 사용용도의 다양화

- 기술창업 출연 및 출자금 집행가능 : 간접비 총액의 5%내, 설립 후 5년까지
- 영리기관의 간접비 사용용도 제한* 폐지

* 기존 :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 가능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기준 마련

- 지급 시 성과평가 의무화
- 해당년도(회계연도 기준)의 간접비 총액의 10%로 지급상한 설정

• 간접비 산출주기 연장 : 1년 → 2년



IV 주요 내용

8. 범부처 연구제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공통기준의 지속적 운영 협력체제 마련

- 과학기술분야 R&D 수행부처간 협의체를 운영하여
범부처 공통기준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체제 마련
- 격월 1회 이상(1차 협의회 개최('12.6.19), 3책5공 제외기준 등 합의)
- 구성 : (주재) 국과위 성과평가국장
(구성) 18개 R&D 관련 부처 담당과장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